

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 1월 13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상정된 안건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1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 사건 중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에 대하여 비상계엄에 관련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이성윤·장경태 위원은 토론 안 하시고…… 그러면 세 분, 박희승 위원까지 네 분. 세 분 순서를 좀……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서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 차례에 안 하실 분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지 좀 주세요.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7분 해도 상관없고요. 7분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여당이 7분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오전에 다 못 끝나요. 그래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5분으로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오전에 끝내려면 5분이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3분 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3분, 5분, 7분 이렇게 나오니까 중간으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이 첫 순서입니다.

○**박균택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특검 추천 조항, 중립적으로 잘 정리된 거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종전에 비해서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죄 부분 이게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외환죄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신 의도는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행동을 유발케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가지셨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막상 특검이 이 8호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 가지고 대북정책 전반을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좀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상의 어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목적 같은 것을 분명히 하려고 좀 제한했던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관계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북한이 왜 무인기를 보냈냐고 항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일부러 북한이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북한을 자극해서 신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본다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다만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과 일반적인 대북정책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었을 때 그게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많은 분들이 의심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 범위 내로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이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특검의 보충성 주장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가 종결됐을 때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지점이라 일반적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방해하려는 책동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관님한테 지난번에 경호원들의 영장 집행 방해 태도, 상급자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법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도록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한번 지시를 해 달라 또는 권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그 부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사항이고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택 위원** 여러 가지 점, 여러 가지 점 말씀하지만 사법부가 결정을 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것처럼 법무행정 책임자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차관님은 훌륭한 분 아니었습니까? 법관도 했고 검사도 했고 법리에 충실한 특별한 공직자로서 임명을 받아 왔던 분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만은 왜 그러지를 못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자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박규택 위원** 아니, 원론이 아니라 그냥 맞다고 하시면 되지 뭘 또 원론적이라는 단서를 붙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택 위원** 합리적 조정이라고 차관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관의 영장은 집행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태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니까 범죄적인 행태하지 말라고 말려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차관님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검의 보충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검법안 2조 8호에 보면 수사 범위에 대하여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일각의 우려처럼 범위가 너무 넓고 기간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법안 심사에서 맨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로 한정하고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차관님, 방금 답변하시던 중에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거나 이럴 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보충성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공조본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 그동안 해 왔던 수사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기소할 사람은 다 기소를 한 상태고 남아 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속도가 느리다든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에 그 수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해서 이미 공소유지 단계에 들어갔고,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권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수사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각종 영장을 발부받을 일이 있으면 경찰에서 신청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지금 논의되는 특검은 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검법안의 무슨 문구 하나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특검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임명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대통령이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 의뢰를 하면 대통령이 선정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원래 과거에 대법원장이 그냥 특검을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기소하는 특별검사하고 나중에 재판을 하는 법원하고 이게 한군데에서 다 소추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 소추·재판의 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서 과거에 각종 특검을 하다가 여야 간에 반성적인 의미에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아주 공평하게 구성하자 해서 여당 2명, 야당 2명 그다음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그렇게 해서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아주 공정한 상설특검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번에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빼고 야당 4명 추천 그렇게 해서 상설특검 임명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최상복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곽규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있는 상설특검 임명 요구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규칙 다시 바꿔서 원래대로만 회복시키면 이 특검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입장인데 법원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나오셔 가지고 대법원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관할이라든지 110조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그렇지만 영장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증폭되어 가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의 헌법에 정해진 권한 행사이니까 우리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부실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무논리,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수사해야 될 특검을 대법원에서 추천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법원이 휘둘리지 않겠냐, 봐주지

않겠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따라서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변협에서 추천하면, 변호할 사람들이 그것을 추천하면 변호사들에 의해서 또 휘둘리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두 개는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윤석열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이것을 수사하는 기관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공수처는 이렇게 수사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이 범한 죄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소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킨 겁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경우 국헌문란이고 그것이 내란죄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윤석열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것으로 지금 증거 관계상 확인되고 있는 단계라고……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기능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마찬가지로 증거 관계상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내용이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법원행정처장님, 국헌문란의 죄는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죄, 그것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죄입니다. 이 내란죄 검찰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합니다. 맞지요? 모두 다 자기의 수사권한에 의해서 수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이 특검이 이례적입니까? 윤석열이 국방부장관과 경호처장과 차장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과 수많은 장군들과 방첩사 사령관 등과 해서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어떻게 특검으로 안 할 수가 있지요? 이게 이례적입니까,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 사안의 염중함이라든지 현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서 권한대행도 이 특검 도입을 통해서……

○서영교 위원 그 내용이 윤석열의 주장이에요. 그쪽의 주장이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염중한 상황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염중한 상황에 특검을 하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게 이례적일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안의 염중함 그리고 현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특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타협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에게 ‘나를 잡으려 오면 총은 아니어도 칼이라도 써라’. 이런 윤석열을 빨리 체포하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돼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이것을 다 모아서 특검이 수사해야 저 윤석열 내란수괴는 그때서야 잡잡해지는 겁니다.

‘칼을 써라’,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화기를 써라. 화기를 가려라’, 이런 것을 일반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요구하고 이것을 국힘당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도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라’, 이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군 장병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장성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이야기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사실관계 확인……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김건희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다 했어요. 수사보고서 받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수사보고서는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고 저도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내용을……

○서영교 위원 내용 다 알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수사보고서는 용산 대통령실로 아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다 보고되었을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데 일단……

○서영교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아요. 이게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이고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수사보고서 자체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수사 내용이 대통령실로 갔다라고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지검은 11월 4일 차 수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영교 위원 김건희 소환합니까? 김건희 소환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것은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 소환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오늘 평소와 달리 토론을 다 하시기 때문에 답변 포함 5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요.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서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체포영장 의견서를 낼 때는 법원에 선임계 제출도 안 하고 의견서를 낸 것인지 혹시 법원행정처장님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로는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전후에 걸쳐서 보고 체계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고 변호사가 의견서 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계속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일차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준항고인가요, 재항고를 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처장님,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도 기각 결정의 한 논거로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판사께서는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고 또 준항고로 다투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확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항고, 재항고를 받으면 마치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그러니까 끝없이 정쟁화시키는 피의자,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법원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원에서 제대로 된 엄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님, 어제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지금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공직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공직자가 경호처 직원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도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만일에 그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 직무정지된,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런 공직자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도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맞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뭘 검토를 해요? 공직자가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시의 적절성이라든지 적법성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된 것 보면 무슨 화기를 지참을, 화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히고요.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화기 사용 여부, 무력 사용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직무까지 정지된 피의자에게 이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무기 사용까지를 검토시킨 것은.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 나중에 이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의 취지를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 사용을 검토시키고 무기 사용이 실제로 됐다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만일에 불미스럽게 공조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해서 일부 과격하게 무기 사용, 무력 사용이 진행이 됐다면 이러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추가로 범죄로 수사되거나 기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적법성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법무부차관님, 금요일에 있었던 소위에 참여하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소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8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만 8호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혼란이……

○김기표 위원 8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8호 부분은 계속 약간 논쟁의 지점은, 논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기표 위원 아니, 지금 물론 법안 명칭이 외환 행위라고는 돼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 한 것이 8호잖아요, 8호?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2조 8호인 것 같은데요. 8호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라는 한정적인 문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닌가요, 기존 것과?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존에는 수식어가 없었고 소위에서……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수식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인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약간 제한적인 내용이 추가된 것은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완전히 제한돼 있잖아요.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당에서 말씀해 오셨던 외환유치라는 부분 관련

돼서는……

○김기표 위원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의 어떤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김기표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법이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김기표 위원 그래서 8호가 지금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다른……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문언상으로는 제한이 추가된 것은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문언상으로는 제한이 됐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제한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언상으로 이미 제한이 되면 다 제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데 앞으로 운용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지금은 운용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당연히 문언상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면 운용도 그것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기표 위원 당연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특검에서 당연히 그 문언에 따라 하지 달리 그것을 벗어나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문언이 제한됐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때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일응은 어떤 광범위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는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응은’, ‘어느 정도는’ 하지 마시고 일단 제한이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제한이 됐기 때문에 문언상으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표 위원 무슨 논의를 더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더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는 뭐예요? 여기서 더 뭐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된다는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독자성을 띤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내란과 관련된……

○김기표 위원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뭘 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이 부분은 혹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아니, 남용은 그다음 문제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하면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남용이 되면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 문제잖아요.

지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문언상 명백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취지대로 운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운용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문언대로만 해서 그대로 운용되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취지에 맞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취지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만 운용되면 된다는 게 지금 차관님의 말씀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 취지는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다만 운용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운용은 그다음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운용은…… 법안 만드는 단계에서 문제없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하여튼 수식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문제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시지요, 답변이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취지가 맞는데?

그리고 애초에 거부권 행사할 때 특검의 보충성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지요, 거부권 행사할 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원론적으로……

○김기표 위원 지금까지도 한 여섯 번 정도나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다 가져와서 특검 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쪽에서 107명이 발의해 가지고 특검 하자고 난리였습니다.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것은 이미 관례상으로도 특별히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는 것으로 다 여겨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차관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것까지 빠져나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지요? 문언으로 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법문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법조항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게 법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런 이런 긴장 유도

행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자.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렇게 됐더라도 운용상에 문제가 있고 남발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바로 위법 수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정하여 제한하여 그것만 수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무부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제한되고 특정된 것을 벗어나서 남용해서 운용하면 어떡하냐, 수사하면 어떡하냐, 그건 위법 수사예요. 그리고 법원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로 가요. 비행기로 가요. KTX로 가요.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법대로 가는 거고, 비행기는 항공 운항법대로 잘 거고, 철도는 철도 운영법대로 잘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킬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자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마치 자동차·비행기·KTX로 가면 중간에 그 법을 어기고 남용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걸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위법한 수사로 달리 처벌하면 되잖아요. 명확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차관님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시고 일 처리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기표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냥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그런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한정하고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제한하고. 그러면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니에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맞지요?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콕 찍어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오전 중에 끝내자면서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차관이 저렇게, 답변을 딱 명확하게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유상범 위원** 아니, 오전 중에 끝내자면서 위원들 질의시간 만큼 계속 중간에 하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참조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차관님, 우리 특수한 안보 현실에서 외환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문언 해석이 어떻고 적용상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회피를 하니까 답변이 꼬이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논란이 있을수록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검법을 하면 제정법이니까 공청회 해야지요. 특검 도입이 필요한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수사 기간, 인력, 대상 등등 논의할 게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검법 만들어 놓고서 재의 요구해서 부결되니까 마치 엄청난 양보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을 오도하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 선례와 비교해 봤을 때 위헌성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특검 도입이 수사가 끝나고 보충적·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특검 강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과거 특검 보면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특검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특정 정당이 만들고 단독으로 처리하면 그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거지요. 이거는 법리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또 과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던 특검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수사 대상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이거는 받겠다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합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특검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대북송금 특검 관련돼서는 당시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노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측근비리 특검에 있어서도 당시에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2건은 다 여당은 반대했던 안이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어쨌든 대통령께서 수용을 한 거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한 사례도 있고 안 한 사례도 있고.

○**박준태 위원** 수사 기간 볼게요. 수사 기간을 대폭 줄였으니까 문제없다. 그런데 수사 기간 70일로 했다고 하는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또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고무줄 특검이에요.

대상, 사실상 무한정, 압수수색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 시설도 몽땅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해 놨어요.

또 공보 조항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 시절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가이드라인 만들었습니다. 피의자 소환도 비공개로 해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혜택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에 대국민보고 조항 넣어서 일일 브리핑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론 수사하겠다 이런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는 겁니다. 언론 브리핑하는 자체가 문제인데 ‘군사기밀은 브리핑에서 제외하니까 이거 괜찮아진 겁니다’, 궤변입니다.

외환죄요? 오히려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됐습니다. 이것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뭐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안보 이슈만 포함시켜서 문제가 없다, 앞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렇게 붙였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게

야당 주장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안보 이슈를 모두 외환죄로 수사하는데 이게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차관께서 법리적인 문제, 법 해석의 문제만 따지지 말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그걸 국무위원으로서, 대행하는 위치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특검 보충성 얘기하면서 수사 끝나고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것을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원칙이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준태 위원** 그런데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답변하면서 수사 관할 논란이 있는 점을 언급하시면서 특검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공수처가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논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지요. 공수처 수사권 논란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논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경찰이 내란 혐의 수사할 권한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특검의 보충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수사권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제도 운영의 원칙과 선례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차관님,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불출석하겠다, 내일 열리는 탄핵 1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뭐로 들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하면요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그 체포영장이 불법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집행 방법도 법원에서 제시해 주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니,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

니까 그런 거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생기면 안 되지요.

○**이성윤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내일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발언 중에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못 나오겠다 했거든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왜 불법이 아닌지, 그다음에 그걸 막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관할 또 110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영장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윤석열 측이 지난주에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내란 선동 행위라고 했어요. 주장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저는 내란 선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렇게 선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는 사람들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옛날 모 신부님이 ‘용산 이무기가 지랄발광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주말에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차관님,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언론 보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윤 위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첫째, 옳은 말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건 옳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추후에……

○**이성윤 위원** 법률적으로 해서는 되는 말입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나중에 적법성 여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성윤 위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늘 아침에 보다 깜짝 놀랐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정말 경호처 직원한테 체포 방어를 위해 ‘무기나 총이나 칼을 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평가 한번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적법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또 거기다가요 김건희 라인으로 뽑힌 경호처 차장은 뭐라고 했냐 하면 계시판에 올라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계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내부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이 차벽을 쌓고 그다음에 철조망을 치고 석열산성을 쌓았는데 거기에 있는 극우 세력들의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골단이 나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들이 시위하는, 탄핵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따라가면서까지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언론 통해서 확인……

○**이성윤 위원** 언론 통해서 들으셨으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이런 일을 막도록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위원장과 그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과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데 이걸 막도록 지시할 생각 없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매끄럽게 봉합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차관님이 봉합되기를 바랄 게 아니고요,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빨리 체포·구속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이 엄중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서부터 과정 또 최종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을 냉철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따져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중심이 바로 오늘 법사위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작금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한남동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밤낮을 지켜 가면서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스스로 반성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나 대법원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갈등 지금 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그래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제대로 따져 보자고 오늘 이번 특검법을 발의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갖다가 내란죄로 단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해 왔습니다. 분명히 확정된 바 없지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단정적인 표현은 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따져 보고 수사해서 결과가 나올 때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목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 제2조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의 제8호에 보면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지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1소위에서 수정을 하셨다 그래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넣고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이 부분에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게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북한에 공격 유도한 게 우리가 있었나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무인기의 평양 침투,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이 법에 내란혐의로 조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단정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도 부족해서 외환죄까지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외환죄 관련 부분을 넣음으로 해서 그동안 부결된 바로 12·3 계엄 관련 특검법은 정당성과 모든 이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있지요. 2조 1항 11호에 보면 여기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사는 가급적이면 신속히 해야 되고 또 빨리 국정 안정을 찾자는 게 이번 특검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수사 원칙 아닙니까? 과잉수사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대행님,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도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직접 관련된 사건……

○**송석준 위원** 맞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 공직자의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명확한 규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직무수행을 배제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검사추천권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유사시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이 안 될 경우, 대통령님이 안 할 경우에는 임명을 간주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그런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 그다음에 과도한 인력과 기간이 된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제일 많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의 특검보다도 훨씬 더 많은 155명, 그동안 과거에는 105명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특검 기간도 최장 120일로 이것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국민……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이런 사건의 보고를 통해서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점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 등에 대한 특례에서 바로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원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 수집에 협조하도록 하는 면에서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에 심격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법안에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특검법은 다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법명과 그리고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서 발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최소로, 죄송합니다.

○**박희승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이요?

○**박희승 위원** 예, 시간을 지금 5분으로 주셨는데……

○**위원장 정청래** 딱 1분,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박희승 위원** 1분, 2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위원장님이 더 하시겠다 하면 1분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냉정하게 자르는 게 낫지 2분, 3분 딱 계속 훌러 가니까 지금……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희승 위원** 1분 더 주셔서 더 하시라고, 아예.

○**위원장 정청래** 원래 5 플러스 1, 7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3분 하자, 5분 하자, 7분 하자 해서 5분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5 플러스 1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영교 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 포함 5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예비타로 혹시 이따 토론이 안 끝나면 토론 종결 동의를 해야 될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자격이 없어요, 다 토론해 버리면. 그래서 장경태 위원님에게 제가 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자발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토론 종결 동의를 이따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장경태 위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좀 희생을 건의했더니 자발적으로 희생하겠다고 아주 훌륭한 자세를 보여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오늘도 특검 표결하려고 법사위 열렸는데요. 이제 특검 표결하는 것이 법사위에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월례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저는 특검의 시작,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검의 출발의 요건이 바로 보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중대하냐 국민적 관심이 크냐 그것은 보충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체포영장이나 수사의 적법성 내지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이 예외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실은 수사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기소가 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는 다 수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들은 확보돼 있다면 사실 기소하는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여기까지 수사가 와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을 보면요 1호부터 6호까지는 12·3 계엄 선포 시작부터 12월 4일 계엄 해제 시까지 있었던 내란 혐의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그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7호에 보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출기차게 지금까지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동조자, 내란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수 이미 고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수 유튜버들도 고발했고 이제는 카톡을 주고받는 일반 국민들 까지도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내란선전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이미 계엄 해제 전까지의 일이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7호,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이후에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선전죄로 고발해서 수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민주당은 그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호를 포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8호에 지금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이런 것들이 외환죄에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것이 맨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우리 직무대행께서 제한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니까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해외파병, 대북전단, 대북방송, 대북확성기 가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란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소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 대북정책 모두를 내란죄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죄는요 형법 92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외국과 통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환유치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북정책을 하면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이것을 북한과 통모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 금지하라고 김여정이 하명하니까 그 법 금세 만들었다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 이런 대북확성기, 대북전단 이것을 외국 또는 북한과 통모해서 하고 외국인과 통모해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러니까 외환유치죄가 된다? 이렇게 구성요건을 엮어 가서 이걸 내란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외환유치죄의 구성요건하고 맞아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특검의 보충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든지 수사 대상을 어떻게 바꾸든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원래 특검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위의 사건들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은 추가로 다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대상 몇 개를 넣고 빼고 한다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은 보충성에 반하고 수사 대상을 보면 너무 그것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7호 부분 선전·선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수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첨언하고자 하면, 형법 90조에 보면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형법에 말하는 선동·선전은 이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그 범죄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전이라는 개념이 혹시 사후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원래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선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벌써 고발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향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맞네요, 맞아.

○위원장 정청래 지금 장동혁 위원께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내란죄 공범” 허위사실 유포로 박찬대·김용민·정청래 고발”, 방금 이런 뉴시스 속보가 떴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고발 대상은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이 됐고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 뭐 그냥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다 고발할 방침인가 봐요.

○주진우 위원 선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주 장하십니다.

○서영교 위원 무고죄로 하세요, 무고죄로.

○박준태 위원 아니, 당 차원의 당무 수행이잖아요.

○박군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박군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이렇게요 이 동의 여부를 떠나서 찬성 여부를 떠나서, 고발에 대한 찬성 여부,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발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현재 신분이 그렇습니다—의 12·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 다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는데 본인만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법 집행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경호처 경호관들이 부모들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더 무거운 죄예요, 항명죄가 더 무거운 죄예요?’ 윤석열의 체포영장 거부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항명죄 아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둘 중의 하나로 입건, 조사, 처벌받게 돼 있어요. 본인은 지금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치 공방, 고소·고발전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 같아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은, 내 부하 직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를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리더다운 모습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인들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쪽의 싸움이, 고소·고발이 격화되는 거예요.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많이 보신다니까 이 법사위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소모적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설특검 요구하는 법안도 가 있지요, 정부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추천 의뢰 단계에서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그걸 결재 내지는 사인을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 최측근 법률참모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최측근이라고…… 하여튼 법률적인 측면에서 참모는 맞습니다.

○**박희승 위원**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고 그런 게 뉴스에 뜨던데 본인은 고발 안 당하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는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내란 상태, 국민들 간에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그런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공감합니다.

○**박희승 위원** 특검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대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부 측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박희승 위원**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검법 논의가 있기 전에 상설특검 신청하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특검이든 저런 특검이든. 왜 좌고우면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권한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법무참모가 뭡니까, 그런 걸 건의하고 책임을 지셔야지 마치 남 일처럼 방기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박희승 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부대와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지금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시위를 하고 주말 없이 밤낮없이 이러고 있는데 빨리 이런 질서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법무부 일, 소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는데 여당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당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정치적인……

○**박희승 위원** 자꾸 정부 여당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버렸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직 탄핵 결정 난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은 여당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써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여당 하세요.

○**유상범 위원** 여당 하세요, 여당 해.

○**박희승 위원** 여야 협의를 해서 해야지……

가만히 계십시오.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 말 있으시면.

협의를 하라는 취지예요, 제 말은.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윤석열 피의자도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발언했지만 본인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 받았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체제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야당 추천 내지는 국회 추천 특검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부결됐지만 전의 다른 법안 그게 위헌이었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박희승 위원** 무슨 위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위헌적 요소가 뭡니까? 자꾸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이게 위헌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부 정당이 배제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논의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내전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특검 도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박희승 위원** 아니, 국회가 지금 여야 합의로만, 만장일치로 됩니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결국 다수결 원칙으로 결론 내는 게 헌법에 맞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의 요구한 취지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특검 도입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더더욱 중요한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차원에서 재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희승 위원 저는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우리 현 정부도 그렇고 이런 국가비상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피의자는 사실상 내전 운운하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칼을 써라' 이런 말까지 거침없이 하는데.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있는데도 왜 멈칫멈칫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호관들 중에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말고 정작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방 조리원들, 외국어 좀 잘하는 경호관들, 전투요원도 아니에요. 빨리 종료시켜야지요, 이런 내전 상황을. 안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하루빨리 혼란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박희승 위원 참모로서 빨리 건의 좀 하십시오, 제대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이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 야당으로 우리가 부르고 인식돼 왔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은 항상 야당보고 '왜 발목 잡냐'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냐' 이렇게 보통 통상 서로들 공격해 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과 독주를 하는 공격이 뒤바뀌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

○유상범 위원 민주당이 의회 독재하는 건 자백하셨네.

○위원장 정청래 의회 독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상범 위원 독주가 독재지 그러면 뭐가 있어. 자백한 것 맞네.

○박균택 위원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보통 여당이 야당보고 '왜 자꾸 발목을 잡냐'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여당이 뭘 추진하고 하려다 보면, 실행하려다 보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발목 잡은 게 뭐 있어요, 정부가 하는 것을?

○유상범 위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민주당이 발목 잡았지.

○송석준 위원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희승 위원님께서 지금 야당 여당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유상범 위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반론이 일어나게 만드

네.

○위원장 정청래 잠시 좀 쉬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했어요.

○송석준 위원 뭘 잘해요, 잘하긴?

○유상범 위원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지.

○송석준 위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해도 될 얘기예요.

○유상범 위원 말장난 그만해요.

○송석준 위원 우리 국민들 심각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금 의혹이 있는데요. 혹시 공수처가 서부법원에 체포영장 신청하기 전에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수처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한 결과……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압수수색영장 청구한 사실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 그리고 서부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앙지법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은 것 외에는……

○조배숙 위원 확인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됐다는 사실이 과다하게 퍼져 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더 확인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검법이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을 수정안을 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과연 이 특검이 보충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 지금 특검법을 추진해야 될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건도 거의 다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만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은 지난주 1월 8일 날 부결됐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데 9일 날 재발의해 가지고 10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했고 법안심사1소위 했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급해요. 다급하게, 무슨 통과될 때까지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뭔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계속, 이 특검법에 의하면 국민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피의사실 외라고 하지만. 그러면 계속할 경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닌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특검법의 문제점 수정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환 이것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수정했으면 과거에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수정을 하면 되지 새롭게 외환유치를 추가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8호에 보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등등’ 해 가지고 국가안보와 한미 군사동맹 관련 사항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어요.

그리고 또 제19조에 보면 압수·수색 특례 규정을 해 놨어요. 1차 체포영장 때 판사가 임의로 기재해 가지고 논란이 됐지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규정을 이번에는 아예 특검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수사 대상에 보면 10호에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특검에서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차관님,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남동 관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정 범위 내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문제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출입 자체가 제한이 돼요,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그러면 과연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부대장이 승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오지요? 승낙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형사소송법 110조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특검법에 이걸 뺀다고 이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법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철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국민 여러분, 그래서 친위쿠데타가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다 있고 내란수괴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내란수괴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국민들 생각은 진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내란은 열심히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계엄 해제로 끝났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압니까? 80년대 전두환·노태우 내란을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벌을 하니까 군인들도

‘아, 이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았고 국민들도 ‘아,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런 내란 또 발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19조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비밀 같은 것들을 지득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거짓 선동을 해요. 이 법에 무슨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외환유치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 외환유치죄가 어디 있습니까?

8호에 보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외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외환유치죄는 적군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외환유치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에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형법 99조 일반이적죄에 성립……

○**김용민 위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검토가 가능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라, 특검이 수사해서 외환죄의 일부인, 일종인 일반이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에 동의합니까? 차관님, 동의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요, 그것 하자는 거예요. 어디 여기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독재하려고 국민 다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태의 엄중함에 비추어 봤을 때 실체적 진실규명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런 건 용서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왔습니다. 내란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까지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지요. 내란 선전·선동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직

적으로 추가 내란을 선동하거나 기존의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를 이런 것들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온 국민을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본색원해야 다시는 내란을 꿈꾸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 범위가 있잖아요. 수사 기간도 제한이 있고 수사 인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것도 벽찬데, 윤석열 수사하는 것도 벽찬데 어떻게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우는 접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인지 사건 관련해서도 이게 수사 기간이…… 수사가 늘어난다고요? 예전에 이예람 중사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드루킹 사건, 기존 특검에 다 인지 사건 들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게 마치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까 제 취지는, 그때 소위 때도 관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범위를 좀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은 당연히 들어가는 규정이잖아요.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존 특검법에 다 있었던 규정은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반대하지 않지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김용민 위원 그리고 상설특검법 이것, 지금 상설특검추천위원회의 위원이시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추천 안 합니까? 상설특검법에는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하라고 돼 있는데 별씨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수사 요구가. 아까 여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제됐다고요? 혹시 국회운영규칙 본 적 있어요? 여당이 항상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당도 원래 두 명 추천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만 배제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차관은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지요? 그러면 차관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추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차관도 그런 의심 받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상설특검……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국힘이 추천하는 두 명 배제해라. 대통령이 범죄의 대상일 때,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두 명 제외해라, 딱 그때만입니다. 그게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상설특검법에 위원들은 다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원들은 중립성을 지키고 엄정하게 추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빨리 추천 의뢰하라고 빨리 건의하십시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특검 추천 방식이 개선됐다고 해서 법안 전체의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이 발족되면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공명심에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요.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차관님, 미국에서 조차 최근에 특검이 폐지된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특검 제도가 폐지된 것은 특검이 사소한 것까지 기소하거나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 때문에 폐지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이게 위헌법률심판이 없더라도 이렇게 위헌성이 강한 법률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의요구권은 위헌법률심판이 있기 전에 사전적 통제 수단이거든요. 국회의 입법권이 남용됐을 때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헌법의 위헌재판밖에는 통제할 수단이 없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수사 대상 중에는 내란선동죄의 문제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내란선동죄가 인정된 판례, 이석기 사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반토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130여 명의 통진당 관련된 조직원을 모아서 통신·전기시설을 파괴하고 폭탄 제조법을 논의하고 목숨 걸고 통일연맹 하자고 결의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한 사람이 내란선동죄로 처벌됐어요. 일반 국민이 카톡 보냈다고 내란선동죄 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될 수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민주당의 탄핵·특검 날발, 예산 삭감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계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국민이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내란선동죄 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내란선동죄는 선동을 통해서 장래 내란 행위 실행을 유도하거나 실행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래 내란 행위를 유도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돼서 판례상으로 내란죄가 성립 소지가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는 건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당하는 국민은 말도 안 되는 내란선동죄라는 죄목 때문에 수사기관에 끌려 다녀야 되는 꼴이고 이 자체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동·선전죄는 주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의를 굳게 하는 데 의미가 있고 선동이라고 할 때는……

○주진우 위원 예, 좋아요.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민 세금을 보조받아서 하는 거고 국민 세금을 받아서 당 운영하면서 국민 신고하라고 하고 직접 그 비용으로 고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외환죄도 문제입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건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대북확성기 제재라든지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은 북한 지도부가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 수단이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본다고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북한 무인기 문제도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 작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인기 보냈느냐라고 북한이 질문하면 딱딱 우리나라가 대답해 줘야 됩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러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헌법상 국토 수호 의무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포함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비상계엄 후에 스스로 밝힌 고발 건이 무려 67건이에요. 여기 계신 민주당 법사위원님들 누구도 누구 상대로 무슨 혐의로 고발했는지 설명하라면 당연히 못 할 겁니다. 이걸 수사 범위로 삼는 것은 무한정으로 수사하자는 것인데, 특정되지 않는데 차관은 이 고발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지금 인지된 관련 사건은 모든 특검법에 다 들어와 있는 조항인 반면에 고소·고발 사건은 예전 특검법 찾아보니까 2건만 도입됐고 최근에는 특검법에 도입되지 않는 규정이라서 좀 광범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주진우 위원 저는 압수수색 예외 규정도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느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수수색 예외 규정, 뭐 안보시설, 공무상 전문가 비밀을 왜 이번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물론 이 사건의 특수성상 국가기밀과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점은 인정을 하는데 이 제도 운용을 할 때 있어서 국가안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업무 사항은 아닌데요 국정원법에 내란·외환·반란·대테러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차관,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위에서 오는데 내란·외환·반란·대테러,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연 개념이 없어요. 소위 국정원장은 작년 3월 윤석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국정원장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질문을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안 했다는 걸 보고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을 했다…… ‘왜 고소를 안 했느냐’, 이제 생각하겠대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의 특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제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거기에 외환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어요. ‘외’ 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외환죄를 포함시켰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언제 우리가 카톡을 관리하느냐……

제가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매월 보훈처로부터 보훈기금을 받아요. 제가 남북관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부님, 선친, 저는, 3대 빨갱이다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 사람들이 교육을 했어요. 이걸 전부 잡았는데 제가 이 카톡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나와서 카톡에 퍼 나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고발을 합니다. 이게 카톡 관리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정치적 공세를 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세요. 제가 정보위에 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저희 보좌관이 기록해 가지고 좀 봤지만 아니, 대통령도 아닌 윤석열이 경호관, 측근들 모아 놓고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해라’ 이게 말이나 돼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보고 공권력을 유지하는 법무부가 행감치고 있어서 돼요?

보십시오. 김민전 의원, 과거 교수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참 팬찮은 분이었는데, 물론 김대중 때도 안철수 때도 권력에 잘 오려고 계속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윤석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백골단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잠잤는데 ‘나 잠 안 잤다’. 저는 잤어요. 제가 잔 사진하고 김민전 의원이 잔 사진이 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저는 잤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특검을 왜 우리가 주장하느냐, 법원행정처장께도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원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자 하는 것 아니에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주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외환죄가 있어요, 민주당 특검안에? 이러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카톡 감독 이런…… 이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을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야지 그러면 윤석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2년 7개월간 대통령으로 모셨다고 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공수본이나 공조본이나 서울구치소로 걸어가야지, 수갑 차면 국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꽃가마 태워서 잡아가요? 말 태워서 잡아가나? 이런 것은 검찰에서 말이지요 기강을 좀 세우세요. 알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차관, 그래서 결국은 오늘 1소위를 통과한 이 내란 특검법안이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여야 지도부 간에 최종적인 조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통과된다면 차관의 결론은 최상목 대행에게 ‘이것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법무 참모로서 얘기할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아직 그 건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확정 지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본인이 제삼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은 매우 진전된 것이고,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본인 입으로 '위헌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다.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박범계 위원** (책상을 내리치며)

그러면 일국의 법무부차관이면 일관되게 법적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줘야지 여기 가서는 진전된 것이고 여기 와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했던 그 발언과 차이는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외환, 외환 하는데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다음 날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면 전쟁 가능성을 러시아가 인정한 거예요.

이 비상계엄이 작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재작년 2023년도부터 미리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얘기는 보도를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런 내용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아까 김용민 위원이 적절히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합니까?

드론, 평양에서 무인기 떨어졌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안보실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봤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관련된 내용의 보도는……

○**박범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드론사령부, 합참, 국방부 어디에서도 NCND, 수십 차례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매우 높은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 정도의…… 법정에서 만약 그런 답변을 하면 여기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만 판사가 어떻게 사실 판단하겠습니까? '드론 보냈구나. 저급한 드론 보내 가지고 평양시민들이 다 들도록 해 가지고 격추하기를 원했는데 격추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틀립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환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유도 혐의예요. 외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님 말씀……

○**박범계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이 내란죄가 결과범입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아작 나고 중앙선관위가 아작 나야지 내란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과거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태범이라고 했습니다. 상태범이란 뭐냐? 내란죄의 기수가 됐더라도—내란죄 기수는 계엄 해제라고 칩시다—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까지도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그 뒤에 또 통일주체국민회의인가 거기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12대 대통령. 그래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시점에 가서야, 81년 8월 달인가…….

○유상범 위원 1월 24일, 계엄 해제 시기.

○박범계 위원 81년 1월 24일 이어서야 계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료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명백하게 대통령으로서 살상무기를 써서라도,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체포 집행을 막아라 이렇게 하는 판국이고 관저 앞에서 아스팔트 태극기부대가 선동하고…… 당신이 해석했듯이, 차관께서 해석했듯이 선전과 선동은 달라요. 선동은 말한 것처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선동일 수 있습니다. 선전은 지속되는 위법한 상태를 계속해서 광고하는 행위, 지속적이고 조직으로 선전하는 행위가 선전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란은 종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법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 총기 사용 허락을 할 정도로 지시했다면 제2의 내란 행위의 획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 선전·선동이 안 된다는 차관의 법리적 판단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지엽 말단적이고 근시안적인 해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 대법원 판례 읽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읽어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81년 1월 24일 날, 1년 이상 왜 그 위법 상태가 유지됐다고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는지. 전두환이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집권이 아니라 아직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내란의 위법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리고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라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1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안 줍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문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는 시간 오버했다고 바로 지적하시더니 어떻게 박범계 간사님이 시간 오버를 저보다 2배 이상 했는데 아무 지적이 없나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거기다가 왜 책상을 칡니까, 왜? 간사님이 굳이 책상을 안 쳐도 말씀 잘 하시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상을 쳐서 공포감이 들어요, 공포감이. 민주당이 여당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정말 발언 조심하시고요 행동 조심하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오버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송석준 위원 책상 치지 마시고 시간 오버하지 마시고요 단정적 의견을 얘기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좀 하세요!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지난 12월 24일 경인가요 ‘블랙요원이 미복귀했다. 폭탄을 소지하고 공항에 막 돌아다닌다’, 여기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얘기했어요? 바로 확인됐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런 사실 없다. 12월 4일 날 전부 복귀했다. 일상적 훈련이다’, 그 이후에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오늘 또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했다’ 언론 보도 나오자마자 여기서 말씀을 세게 하십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냐’.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바로 밝혔어요.

○박균택 위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믿어요? 부끄럽지 않게……

○박균택 위원 경호원들이 한 얘기니 믿어도 되지요.

○유상범 위원 무인기 북한 발송 안보실이 지시했다고 해 놓고서 안보실에서 바로 확인했잖아요, 안보실에서 지시한 사실 없다. 끊임없이 내란이 계속 중이라고……

○서영교 위원 거짓말쟁이 윤석열이 했다는데 뭘 안보실이라고……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세요. 질문할 때 좀 들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공포를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들이.

법원행정처장, 제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216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처분도 216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110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준용되는 것까지는 법문상 명확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통상적인 경우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데 거부를

안 합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군사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110조가 적용된 범위에서는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주류적 판례가 물적 장소라고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판례는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아, 주류적 해석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110조 해석은 전부다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만 규정돼 있지 사람,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 자체에 대해 제대로 설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람 체포를 위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들어가는 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기 위한 시도도 적법해요. 그리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집행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110조, 경호법 또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막는 행위도 적법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과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110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도 적법하고 책임자가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이것을 막는 행위도 적법하고. 그러면 2개의 적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마치 이 거부하는 행위가 불법인 양 막 대연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처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거부하는 행위도 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법에 근거해서 막는 행위도 적법하다면 두 적법이 충돌한 상황입니다. 마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에요.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도 그렇고 또 요 며칠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분열되고……

○유상범 위원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재항고됐으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이 부분 입장 정리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주문합니까. 그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보세요.

법무부차관, 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협박 행위이고 폭동이다 그래서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 비로소 내란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우리 비상계엄 언제 종결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바로 당일 날……

○유상범 위원 12월 4일 날 3시인가에 종결됐잖아요. 해제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란 상태입니까? 지금 내란을 가지고 공포정치 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위원들이.

○김용민 위원 백골단이 왔잖아요, 국회에 백골단이. 백골단이 내란이지.

○유상범 위원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탄핵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카톡 사찰하겠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카톡 사찰, 가짜뉴스 사찰하는 것 포고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선동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카톡 사찰 적절해요, 안 해요? 그건 답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란 선전·선동 여부에 대한 해석이 나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상범 위원 내란 선전·선동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상계엄이 유지될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해제되는 순간부터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 아니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사후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차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 입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충성의 법리를 생각하더라도 혹시 특검법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위원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요. 비상계엄이 12월 4일 해제됐고 그 상태로 종결이 되면서 이 판례에 의하면 내란도 종결됐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판례 자체는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이 내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판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조금 전의 법무부차관 말씀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판할 사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뭘 그렇게 모호하게 합니까? 명확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뭐가 명확해요? 불명확하지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유상범 위원 지금이 내란 상태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럽지 않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저도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 조용히 하시고요.

○이성윤 위원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은 윤석열이 했지, 윤석열이. 윤석열이 일으키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도!

○서영교 위원 아니, 국회에 총을 들고 온 사람을……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곽규택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은 내란 계속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박규택 위원 뭐니까?

○박규택 위원 저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한 번 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다 끝난 윤석열을 뭘 그렇게 자꾸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어.

○송석준 위원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바짓가랑이가 뭐니까.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아니, 왜 민주당은 송석준 위원 같은 분이 안 계십니까?

○박규택 위원 그러니까 저 한 번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위원 발언시간이 길었다고 항의하는데 연장전 시간을 똑같이 드렸거든요, 유상범 간사도.

○유상범 위원 박범계 간사가 그렇게 길게 썼기 때문에 내가 좀 쓴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규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석준 위원도 안 드렸고.

○박규택 위원 아니, 그런데 틀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지켜보고 있어라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균형감각을 갖추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 130개 조항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로 충돌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법 앞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예외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헌법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절도죄, 강요죄, 뇌물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일종의 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법치주의에 양보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달라지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이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양보를 해야 될 때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란 행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11조, 84조를 조화롭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불소추권을 법원의 영장도 적용하고 있고 공수처나 경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현행법 도둑이 도둑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라고 큰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거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네.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도둑은 보호하자'라고 말하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맞지 않지요?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 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벌하자고 국가기관,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다면 도둑을 옹호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를 내란 상태로 보느냐……

○위원장 정청래 차관님, 그 부분은 아직 얘기하지, 그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도둑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안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옹호하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형사처벌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자체가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내란의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정청래 그런 거고요.

내란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형법에서 내란죄에 대한,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를 형법 91조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법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셨습니까?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댄 것이 내란이잖아요. 공수처·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가기관을 향해서 총을 쏴라 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아직 내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무나 뻔한 것 가지고, 낫 놓고 기억 자를 왜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최고의 국정 안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내란 상태를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되지요. 발언에 좀 더 주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질문을 하지도 않는 회생을 감수하면서 장경태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간사님들 협의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박군택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 부분 표결 안 해도 되지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들 협의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의 지시에 따라서 간사님 두 분 나오세요.

○곽규택 위원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간사와 협의)

○위원장 정청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박지원·박군택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 종결에 이의가 있는데 일반적 표결이 가능합니까? 지금 절차가 잘못됐어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간을 한번 드립시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유상범 간사님께서 토론 종결을 안 하시고 계속 보충질의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반대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토론 종결에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상범 위원 종결할 것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종결을 선포했지, 표결을 선포한 게 아니라.

○송석준 위원 토론 종결도 반대고 표결도 반대……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박군택·박지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아까 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태 위원** 동의자도 토론 안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박준태 위원** 법조문대로 해야지.

○**유상범 위원** 이것 지금 잘못됐네요.

○**김용민 위원** 아니야. 그 동의가 그 동의가 아니야.

○**박은정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자도 종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동의가 그 동의가 아니라고요. 안건을 새로 옮기는 동의잖아.

○**김기표 위원** 그 동의는 의의를 통하는, 찬성의 동의가 아니고 발의하는 의미의 동의.

○**김용민 위원** 한두 번 했어요, 우리가? 그 동의가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박준태 위원** 요청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아니, 그 동의가 아니라니까. 한자가 달라, 한자가.

○**위원장 정청래** 자, 보세요.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후다닥 봤네. 너무 잘 알고 계셔.

○**박균택 위원** 동의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박준태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국회법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위원장이나 의장이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발언도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범 간사께서 국회법 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를 얘기하는데 토론 종결을 동의하는 자는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토론 종결 자격이 있는 자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토론에 참여 안 했거든. 토론 그만 좀 해 주세요’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찬성은 토론에 참가한 사람도 다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박범계 위원** 정확합니다. 박준태 위원님 잘못 아신 거예요.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

○**유상범 위원** 전문성이 높다, 정말. 145조 이후에 더 전문성을 보여 줬네.

○**박범계 위원** 우리가 전문성이 아니라 위원장님 전문성이……

○**곽규택 위원** 다 너무 전문가들이셔 가지고……

○**박균택 위원** 저는 ‘같을 동(同)’ 동의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동의 전문가잖아요.

○**박균택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제가 국회법은 백번도 넘게 읽었는데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지금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제명서부터 각 조항에 다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보류시켜 주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시지요. 법사위의 권위를 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듭시다.

○**위원장 정청래**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거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장경태 위원** 윤석열과 판박이네요, 판박이.

○**이성윤 위원** 윤석열닮아 가고 있어요.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이 여당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당이면 좀 성숙된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당이 아닐뿐더러……

○**이성윤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장경태 위원** 박근혜 판박이는 다 공천 탈락했는데 23대 국회에서 윤석열 판박이 두고 봅시다.

○**송석준 위원** 오버한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엄중한 이 법을,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은 하루빨리 특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권성동, 장제원 다 박근혜 탄핵 찬성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에서 비켜났지.

○**송석준 위원** 자중해 주십시오. 자중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일부 위원 퇴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안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국민들은 한남동 관저를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력,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그래서 가장 시빗거리가 되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시비거리가 되었던 특검 추천에 대해서 헌법기관 그리고 입법·행정·사법 중의 한 축인 사법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삼자 특검안까지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이 내란 특검법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